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5. 3. 21.(금)

검 토 안 건	제 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장애인복지과)

○ 제안일 : 2025. 3. 10.

○ 회부일 : 2025. 3. 11. (의안번호 : 25-21)

2. 제안이유

○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장애인 안심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 제시

- “장애인, 보호자, 생활 안심보험” 용어 정의

나. 보험 대상자 및 보험가입(안 제3조～제4조)

- 발달장애인, 장애청소년으로 적용범위 규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가입 근거 마련 및 보험회사 선정 방식 규정

다. 보험료 납부, 보험의 보장내용(안 제5조～제6조)

- 보험료 납부 방법, 보험의 보장내용 규정

라.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원 제외(안 제7조～제8조)

- 보험금 청구 방법 및 보험금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 명시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입법예고 : 2025. 1. 9. ~ 1. 29.(제출의견 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수정의결(2025. 2. 27)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수용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으로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장애인 안심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과 정의를,
-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적용범위와 보험가입 근거 및 보험사 선정방식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보험료 납부방법 및 보험의 보장내용을,
-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보험금 청구방법 및 보험금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조례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자기표현, 결정력 부족으로 본인의 신체적 사고 위험뿐 아니라 도전적 행동으로 타인에 대한 신체·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장애청소년 또한 비장애 청소년보다 상해나 사고 노출 위험이 높음.
- 상대적으로 사고위험 발생에 따른 비용이 높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검토의견

- 발달장애인이란 크게 자폐성장애인과 지적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현재 마포구 자폐성장애인은 312명, 발달장애인은 868명으로 총 1,180명으로 전체 장애인 중 9.58%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9세 이상 24세 이하 장애청소년은 2024년 12월 현재 169명으로 보험대상자는 총 1,349명으로 조사 되어 연간 소요비용 홍보비를 포함하여 약 68,500천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 발달장애인은 인지적, 행동적 장애로 인한 지적, 운동적, 사회적 기능을 획득·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로 인한 도전적 행동은 타인과 함께하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2023. 6. 대구에서는 지적장애인 남성이 여성 장애인활동보조사를 밀쳐 두개골 골절 등 뇌 손상을 입고 전치 7주 부상을 입는 사례도 있었음.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존에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에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을 때는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있으며, 일부 발달장애인 가정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해 줄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과 지원 체계가 부족한 현실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 볼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이번 제정안을 통해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및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장애청소년의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삶패널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고를 겪고 있으며, 실족사고(넘어짐, 미끄러짐)와 교통사고, 추락사고(낙상사고포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건장한 성인에 비해 체력과 균형 감각 부족으로 신체의 원활한 사용이 어려워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며 우리구 장애청소년들이 제약 없이 마음껏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및 사고 등 사전적 위험의 예방/피해보상/구조 지원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제외대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장애인복지과	신희선 (8880)	이창민 (168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제6조(보험료 납부)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비용추계기간: 2025. 1. ~ 2029. 12.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구비	68,500	70,000	71,500	73,000	74,500	357,500
	소계(b)	68,500	70,000	71,500	73,000	74,500	357,500
□ 총 비용(a-b)		68,500	70,000	71,500	73,000	74,500	357,500

- 1인 보험료 평균 50천원 / 연평균 30명 증가 산출액
- 비용 : 보험료 및 홍보비

4. 재원조달 방안 : 구비 100%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68,500	70,000	71,500	73,000	74,500	357,500
합계	68,500	70,000	71,500	73,000	74,500	357,500

5. 덧붙이는 의견 :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사업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김문찬 (☎ 02-3153-1683)

참 고 자 료

1. 관계법규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2. 향후 5년간 소요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세출	구비	68,500	70,000	71,500	73,000	74,500	357,500

- 1인 보험료 평균 50천원 / 연평균 30명 증가 산출액
- 비용 : 보험료 및 홍보비

3. 마포구 등록장애인 현황

(2025. 2.현재 / 명)

계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발달 (지적,자폐)	기타
12,313	4,939	1,956	1,415	1,229	1,180 (9.58%)	1,594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장애청소년 : 169명(2024. 12월 현재)

4. 자치구별 유사사업 현황

연번	자치구	보험명	내용	비고
1	양천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 **지원대상:** 792명(9세~24세 장애청소년) - **보장내역**: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골절진단금 등 지원 및 자기부담금 0원 - **소요예산:** 6,000천원 - 조례 미제정	2021년 최초 실시
2	종로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 **지원대상:** 273명(9세~24세 장애청소년) - **보장내역**: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골절진단금 등 지원 및 자기부담금 0원 - **소요예산:** 3,000천원 - 조례 미제정	2023년 최초 실시
3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2024. 10. 17. 조례 제정 ※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4	관악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 **지원대상:** 약 600명(15세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 **보장내역:**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상해입원 - **소요예산:** 15,000천원 - 조례 미제정	2015년 최초 실시
5	성동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2024. 9. 25. 조례 제정 ※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